

대전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55
----------	----

제출연월일 : 2006 . 11. 3.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건설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 나.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건설기술심사업무 담당 사무관 및 업무담당자로 변경함(안 제5조제2항).
- 다. 소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수를 변경함(안 제14조제2항).
- 라. 심의수수료를 관련규정에 맞게 변경함(안 별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등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의 : 해당없음
-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 (3) 입법예고 : 2006. 9. 22 ~ 10. 12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을 “「건설기술관리법」” 으로, “대전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대전 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4조중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을 “위촉위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건설기술심사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중 “시장” 을 “대전광역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11조의2제1항중 “관계공무원(이하 “위원등”이라 한다)” 을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중 “위원등은” 을 “자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중 “시장” 을 각각 “대전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10인 이내” 를 “30인 이하”로 하고, 같은 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15조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을 “위촉위원”으로 한다.

제16조중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 을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16조의2중 “위원회” 를 “소위원회”로, “심의위원회” 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단서중 “위원장” 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중 “법” 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시 및 각 구” 를

“대전광역시 및 각 자치구”로 하고, 같은 조제2항중 “시”를 “대전광역시”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대전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각각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명 “대전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한다.

제15조중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대전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를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설계심의수수료 산출기준(제16조의3 관련)

구 분	수수료 (1건당)	비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 심의사항	800,000원	8인×1일×100,000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제1호의2 심의사항	입찰안내서 800,000원	8인×1일×100,000원
일괄대안 입찰공사 설계적격 심의	2개 업체응찰시 7,000,000원	수수료 = 사전검토비 + 기술위원회 심의비 + 평가위원회 심의비 자세한 내용 ※ 산출근거 참조
	3~4개 업체응찰시 9,000,000원	
	5~6개 업체응찰시 11,000,000원	
	7개 이상 업체응찰시 13,000,000원	
기타 심의사항	800,000원	8인×1일×100,000원
<p>※ 산출근거</p> <p>-사전검토비 : 20인×()×100,000원</p> <p>()는 2개업체는 (1일), 3~4개업체는 (2일), 5~6개업체는 (3일), 7개업체 이상은 (4일)</p> <p>-기술위원회 심의비 : 20인×1일×100,000원</p> <p>-평가위원회 심의비 : 30인×1일×100,000원</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건설기술관리법」 -----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 ---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에 풍부한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산하의 5급이상 공무원과 민간인 중에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12인을 초과할 수 없다.	〈삭 제〉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삭 제〉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생략)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임기)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 ----- ----- ----- -----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간사 및 서기) ① (생략)</p> <p>②간사는 시본청 기술직 과장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p>	<p>제5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간사는 건설기술심사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p>
<p>제9조(건설기술심의대상) 위위원회의 건설기술심의(이하 “심의”라 한다) 대상 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구 및 시·구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p>〈삭제〉</p>
<p>제10조(기능) 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영 제9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심의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5조(심의수당 등) 위촉위원 ----- ----- ----- ----- -----</p>
<p>제16조(서류의 보관)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서류는 심의완료후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는 심의요청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p>	<p>제16조(서류의 보관) ----- -----관계 법령 ----- ----- -----</p>
<p>제16조의2(심의기간) 위원회의 심의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부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p>	<p>제16조의2(심의기간) 소위원회----- 위원회----- ----- -----소위원회 위원장 ----- -----</p>
<p>제16조의3(수수료) ①별 제40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설계등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는 별표의 설계심의 수수료 산출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 및 각 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심의요청시 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심의요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 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p>	<p>제16조의3(수수료) ① 「건설기술관리법」----- ----- ----- -----대전광역시 및 각 자치구 ----- ②----- -----대전광역시----- ----- ----- -----</p>

현 행			개 정 안		
[별표] 설계심의수수료 산출기준(제16조의3 관련)			[별표] 설계심의 수수료 산출기준(제16조의3 관련)		
구 분	심의수수료 (1건 당)	비고	구 분	수수료 (1건 당)	비고
<u>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u> 제9조제1호, 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심의사항	800,000원	<u>8인×2일</u> <u>×50,000원</u>	<u>「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u> 제19조제2항제1호 심의사항	800,000원	<u>8 인 × 1 일</u> <u>×100,000원</u>
<u>건설기술</u> <u>관리법</u> <u>시행령</u> <u>제9조 제7호 심의사항</u>	800,000원	<u>8인×2일</u> <u>×50,000원</u>	<u>입찰안내서</u>	800,000원	<u>8 인 × 1 일</u> <u>×100,000원</u>
<u>기본 및 실시 설계(설계시공)</u> <u>인관입찰방식)</u>	3,000,000원	<u>30인×2일</u> <u>×50,000원</u>	<u>「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u> 제 1 9 조 제 2 항 제 1 호 의 2 설계 심의사항	<u>2개 업체용찰시</u> <u>대안</u> <u>입찰업체용찰시</u> <u>공사</u> <u>설계</u> <u>직격</u> <u>심의</u>	<u>수 수 료 =</u> <u>사전검토비</u> <u>+ 기술위원회 심의비</u> <u>+ 평가위원회 심의비</u> <u>자세한 내용은 ※ 산출근거 참조</u>
기타 심의사항	800,000원	<u>8인×2일</u> <u>×50,000원</u>	기타 심의사항	800,000원	<u>8 인 × 1 일</u> <u>×100,000원</u>
<u>비 고 :</u> 검토기간을 2개업체가 응찰하였을 경우 2일 기준으로 하였음 (4개업체까지:3일, 6개업체까지:4일, 7개업체 이상:5일)			<u>■ 산출근거</u> -사전검토비:20인×()×100,000원 ()는 2개업체는 (1일), 3~4개업체는 (2일), 5~6개업체는 (3일), 7개업체 이상은 (4일) -기술위원회 심의비 :20인×1일×100,000원 -평가위원회 심의비 :30인×1일×100,000원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건설기술심의신청서 ----- ----- 대전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건설기술심의신청서 ----- -----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건설기술심의결과 ----- ----- 대전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건설기술심의결과 ----- -----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관계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第5條 (建設技術審議委員會) ①建設技術의 振興·開發·活用등 建設技術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에 中央建設技術審議委員會(이하 "中央委員會"라 한다)를, 特別市·廣域市 및 道에 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이하 "地方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다만, 軍事施設工事中 軍事機密에 관련된 建設工事에 관한 設計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防部에 特別建設技術審議委員會(이하 "特別委員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4.1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央委員會의 구성·機能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地方委員會의 구성·機能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당해 特別市·廣域市·道의 條例로 정한다. 다만, 特別委員會를 두는 경우, 그 구성·機能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基準에 따라 國防部長官이 정한다.

<개정 1995.1.5, 1997.1.13, 2004.12.3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 (중앙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 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1992.12.26, 1994.12.23, 1995.8.4, 1997.7.21, 1998.2.2, 1999.10.30, 2003.3.12, 2005.6.30, 2005.12.30>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건설 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 1의2. 법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도입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3. 삭제 <1999.10.30>
4.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기준에 관한 사항(「도로법」·「하천법」등 건설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설 공사기준을 포함한다)
5. 삭제 <1997.7.21>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제85조제5항·제9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본문·제98조제4항 및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 입찰·대안입찰등에 관한 사항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9. 삭제 <1993.12.31>

10. 기타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과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소위원회) ①중앙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소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30인이내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개정 1992.12.26>

⑤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제11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심의요청) ①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술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26, 1993.12.31, 1994.12.23, 1995.8.4, 1999.10.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10.30>

- 제19조(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지방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0인(특별시의 경우에는 2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7.7.21, 1999.10.30, 2001.7.30, 2005.6.30, 2005.12.30>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 1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2항·제85조제5항·제9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제98조제4항·제10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 1의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 1의4. 다른 법령에서 지방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2. 그 밖에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제2항제1호의2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신설 1999.10.30, 2001.7.30>

④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1조의2 (소위원회 위원선정) ①제17조 제1호 내지 5호, 제6호나항의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제7호 내지 제9호의 심의 사항에 관한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위원은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을 선정.
2. 위원의 선정시기는 심의내용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심의일 10일이전으로 하되, 제17조 제4호에 관하여는 15일이전에 선정.
3. 심의위원의 선정은 가능한 한 발주청·학계·업계 등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선정.

②제17조제6호(나항의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의 심의사항에 관한 소위원회는 기술위원회와 평가위원회로 분리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기술위원은 전문분야별로 「전문가명부」를 활용하여 다음 각목의 방법에 따라 20인 범위내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제1항의 중앙위원회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문가 중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성·경력 등을 심사하여 선정 할 수 있다.
 - 가. 위원은 전문분야별로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2인 이상 선정
 - 나. 위원은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선정하여 이를 입찰참가업체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직종의 전문가를 균형되게 선정하되, 한 직종의 인원이 전체의 40%를 넘기지 않도록 10인의 범위내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 가.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당해분야 기술직렬 4급이상, 관련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이상 공무원
- 나. 건설관련 투자기관(출연·출자기관 포함)·협회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관련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 다. 건설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

③ 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목의 임무를 수행하며, 질문항목 및 토론내용은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한정하며, 특정업체에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 가. 설계심의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공통 질문항목 도출.
 - 나. 질문항목을 토대로 입찰참가업체와 질의 및 토론.
 - 다. 입찰참가업체의 답변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판단.
- 2. 평가위원회는 기술위원회에서 제시한 공통질문항목 및 설계심의 토론회(기술위원과 입찰참가업체간의 질의·답변)의 내용과 발주 청에서 작성한 설계검토서를 토대로 설계점수를 채점한다.